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386
----------	-------

발의연월일 : 2022. 1. 13.

발 의 자 : 김기현 · 권명호 · 권은희
김석기 · 김예지 · 박수영
배진교 · 백종현 · 서정숙
용혜인 · 윤주경 · 윤창현
이양수 · 이채익 · 조태용
허은아 의원(16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의 비용부담주체를 국가로 명시하지 않고 있음.

그러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장애로 인하여 수어통역 등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와 관련하여 법원행정처는 2020년 5월 「장애인 사업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에서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을 근거로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수어통역은 궁극적으로 국고부담으로 해결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2018년 9월에 유사한 취지로 제

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를 위한 수어통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소송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한편,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 속기 및 녹음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법원이 사전에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사법절차에서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장애가 있는 사람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43조 및 제159조).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민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3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역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변론 중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59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변론 중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속기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송비용 산입 제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3조 및 제1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3조(통역) ① (생략) <u><신설></u>	제143조(통역) ① (현행과 같음) <u>②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통역인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역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u>
<u><신설></u>	<u>③ 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변론 중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통역을 신청할 수 있음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 ④ (생략) <u><신설></u>	제159조(변론의 속기와 녹음)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사람을 위한 속기, 녹음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에서 지급하고, 소송비용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u>
<u><신설></u>	<u>⑥ 법원은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가 있는 당사자에게 변론</u>

	<u>중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u> <u>속기 등을 신청할 수 있음을</u> <u>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u>
--	--